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-17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-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-2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-33 (2024. 5. 15.)호 최초 승인고시, 제2025-1(2025. 1. 1.)호, 제2025-5(2025. 1. 22.)호, 제2025-85(2025. 8. 13.)호 변경 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.

2026년 3월 18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- 사업의 명칭 : 부산 수영구 민락동 MBC 부지 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
-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주식회사 하이아트이앤씨 대표자 서재호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비1층 2호(삼성동, 삼성금융프라자)
-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 및 규모
가. 위 치 :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-2번지 외 15필지
나. 구역면적 : 48,128㎡ [실사용면적(공동주택) 29,483㎡]
다. 건축면적 : 4,288.4592㎡
라. 연 면 적 : 121,833.1039㎡
마. 규 모 : 지하6층/지상27층, 4개동(공동주택 366세대)
바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, 부대 및 복리시설

4. 사업시행기간 : 2025년 9월 1일 ~ 2029년 6월 30일

5. 『주택법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

- 가. 『건축법』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변경없음)
- 나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(변경없음)
- 다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의 결정
 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 : 생략)
 - 2)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 : 생략)
 - 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 : 생략)
 - 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 : 생략)
 - 5)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 : 생략)
 - 6)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금액(백만원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
토지가치상승분	14,325	증) 13,184	27,509	도시계획시설 폐지 전·후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
기부채납계획	15,930	증) 10,447	26,377	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

○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

구분	공공시설 설치계획		토지가치 (백만원)			비고
	시설명	면적(㎡)	기정	변경	변경후	
토지	도로	646	4,244	증) 426	4,670	대로3-218호선 (민락동 30-8)
	문화시설	964	6,333	증) 1,851	8,184	
건축물	문화시설	1,844	5,353	증) 5,000	10,353	연면적기준
조성비용	도로	646	-	증) 929	929	대로3-218호선 (민락동 30-8)
	문화시설	1,844	-	증) 2,241	2,241	
합계			15,930	증) 10,447	26,377	

라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(변경없음 : 생략)

7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위 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. 끝.